

2026. 9.

## 미국 뉴스 기사의 영상 임베드와 제목 배경 스크린샷에 관한 제2연방항소법원 판결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소장  
김현숙

### 1. 개요

2026년 4월 23일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언론사가 타인의 영상을 기사에 임베드(embed)하고 그 영상의 한 장면을 기사 제목의 배경 이미지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소답<sup>1)</sup> 단계에서 배척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다.<sup>2)</sup> 온라인 매체가 일상적으로 되풀이하는 편집 관행을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 • 사실관계와 소송 경과

원고 Delray Richardson은 직업 영상 촬영자다. 그는 2015년 5월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두 사람의 몸싸움을 말리는 장면을 42초 분량으로 촬영하여 공개하였다(이하 “조던 영상”). 이 영상은 2023년 7월 힙합 블로그 DailyLoud가 소셜미디어 X에 전체 분량을 재게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피고 Townsquare Media는 자사가 운영하는 힙합 매체 XXL에 해당 X 게시물을 그대로 임베드한 기사를 실었고,<sup>3)</sup> 기사 제목의 배경으로 조던 영상의 스크린샷을 사용하였다.

원고와 The Art of Dialogue가 함께 촬영한 래퍼 멜리 멜의 인터뷰 영상(이하 “멜리 멜 영상”)을 The Art of Dialogue가 2023년 3월 2일 유튜브에 공개하자, 피고는 다음 날과 그 이틀 뒤 두 건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임베드하고 역시 스크린샷을 제목 배경으로 사용하였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소답 서면을 기초로 피고의 판결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 조던 영상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고, 스크린샷 이용은 사소한 이용(de minimis)이며, 멜리 멜 영상의 임베드는 유튜브 이용약관상 라이선스로 허용된다는 이유였다. 항소법원은 앞의 두 판단을 파기하고 세 번째 판단만 유지하였다.

1) 소답(訴答, pleading)은 소장·답변서 등 당사자의 주장서면이 오가는 단계이다. 연방민사소송규칙은 주장 자체로 청구가 이유 없으면 각하하거나(제12조 (b)(6)) 소답만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한다(제12조 (c), 대상판결의 사안). 어느 경우든 법원은 소장의 사실 주장을 진실로 전제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모든 합리적 추론을 하여야 한다. 용어는 이우영,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구술변론 관련법제와 실무운용”,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 2006, 332-333면 참조.

2) Richardson v. Townsquare Media, Inc., No. 25-291-cv (2d Cir. Apr. 23, 2026)(이하 “대상판결”).

3) 임베드는 이용자의 브라우저가 콘텐츠를 원래 게시된 서버에서 불러오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임베드하는 사이트가 사본을 저장하지 않는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이를 침해로 보지 않았으나(Hunley v. Instagram, LLC, 73 F.4th 1060 (9th Cir. 2023)), 제2연방항소법원은 이 쟁점을 판단한 바 없다. 대상판결에서도 피고가 다투지 않아 임베드가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한 채 판단이 이루어졌다.

## 2. 주요내용

### 1) 조던 영상과 공정이용

항소법원은 소답 단계에서 공정이용 항변을 받아들여려면 네 가지 요소가 결정적으로 피고에게 유리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공정이용은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되므로 통상 약식판결 단계에서 다루어지고, 소답 단계의 판단은 예외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에 관하여 법원은 변형적 이용 여부가 지방법원이 본 것만큼 분명하지는 않다고 보았다.<sup>4)</sup> 기사 제목이 논평이 아니라 영상 자체를 주된 유인으로 내세웠고, 본문의 논평도 제3자가 영상을 재게시하며 특정 인물의 관여를 추측하였다는 몇 문장에 그쳤다는 것이다. 법원은 변형성의 정도를 확정하지 않은 채, 지방법원이 상업성이라는 하위 요소를 검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제1요소는 기껏해야 중립적이라고 보았다.

저작물의 성격에 관하여는 조던 영상이 사실적 성격이고 이미 공표되었다는 점에서 공정이용에 유리하다고 보았으나, 이 요소의 비중은 크지 않다고 하였다.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에서 피고는 X 게시물을 임베드한 이상 영상 전부의 재게시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임베드가 유일한 선택지였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게시물의 텍스트와 영상 일부만을 옮기거나, 게시물의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담거나, 하이퍼링크만 제공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영상의 확산 정도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조회수나 반응 수를 제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였을 수 있다고 예시하였다.

법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원고가 소장에서 시장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불리함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고 하면서, 공정이용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시장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은 소장만으로 피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영상 전부를 피고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면 이용자가 원고를 다시 찾을 이유가 없어 대체재로 기능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결국 소답 단계에서 공정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2) 스크린샷과 사소한 이용 법리

법원은 사소한 이용 법리가 별도의 항변이 아니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침해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정리하였다.<sup>5)</sup> 판단할 때에는 복제된 분량뿐 아니라 얼마나

4) 변형적 이용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598 U.S. 508 (2023);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1994) 참조.

5) Ringgold v. Black Entertainment Television, Inc., 126 F.3d 70, 75-76 (2d Cir. 1997).

관찰 가능한지를 함께 보고, 관찰 가능성은 다시 초점(focus)과 현저성(prominence)으로 따진다.

선례를 보면 영화 세븐의 한 장면에서 배경에 흐릿하게 비친 사진은 사소한 이용으로 인정되었으나,<sup>6)</sup> 교회 강당 벽에 걸린 포스터가 여러 차례 화면에 뚜렷하게 등장한 사안에서는 사소한 이용이 부정되었다.<sup>7)</sup>

이 사건에서 스크린샷은 기사 제목의 배경으로 두드러지게 배치되어 독자가 기사의 주제를 곧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원저작물이 문제된 이용물에서 부수적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그 주제 자체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제5호가 영상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이미지에 대해서도 공개 전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스크린샷을 하나의 저작물로 파악하면 오히려 전부 이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시각적 저작물에 관한 선례를 영상저작물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스크린샷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지방법원이 판단한 바 없다는 이유로 다루지 않고 이 부분을 환송하였다.

### 3) 멜리 멜 영상과 유튜브 이용약관 라이선스

반면 법원은 멜리 멜 영상의 임베드에 관하여는 피고 승소 판단을 유지하였다. 유튜브 이용약관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유튜브에 재허락이 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다른 이용자에 대한 라이선스” 조항을 두어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의 범위에서, 곧 재생이나 임베드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다른 이용자에게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임베드를 명시하고 있어 문언상 모호하지 않다고 보았다.

원고는 유튜브 API 약관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그렇게 해석하면 임베드를 명시한 라이선스 조항이 무의미해진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고가 제기한 여러 정책 위반 사유에 관하여도, 그것들은 라이선스의 범위를 정하는 조건(condition)이 아니라 약정(covenant)에 해당하므로 그 위반은 유튜브와 피고 사이의 계약 문제일 뿐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sup>8)</sup>

다만 법원은 이 라이선스가 문언상 스크린샷 이용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이 부분 판단이 영상의 임베드에 한정된다는 점을 밝혔다.

## 3. 결론 및 시사점

대상 판결은 타인의 영상을 통째로 임베드하고 그 한 장면을 기사 제목 이미지로 쓰는 온라인 매체의

6) Sandoval v. New Line Cinema Corp., 147 F.3d 215, 217-18 (2d Cir. 1998).

7) Ringgold, 126 F.3d at 77.

8) MDY Industries, LLC v. Blizzard Entertainment, Inc., 629 F.3d 928, 939 (9th Cir. 2010) 참조.

관행에 제동을 걸 여지를 남겼다. 소답 단계에서 공정이용을 인정하려면 네 가지 요소가 결정적으로 피고에게 유리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언론사가 공정이용이나 사소한 이용을 내세워 이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기는 쉽지 않다.

이용의 필요성을 대안의 존재와 함께 살피는 접근은 시사점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26조는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을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28조는 보도와 비평 등을 위한 인용을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으로 한정한다. 제35조의5 제2항 제3호는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대상판결이 영상 전부를 옮기지 않고도 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진 방식은 우리 법의 정당한 범위 판단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사진촬영이나 녹음, 녹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를 허용하는데, 대상판결이 스크린샷을 사소한 이용으로 보지 않은 근거로 해당 이미지가 기사의 주제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배치되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부수적”이라는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참고할 만하다. 제목 배경 이미지가 기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이상 그 이용을 부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임베드와 플랫폼 이용약관의 관계도 짚어 둘 만하다. 우리 판례는 링크가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경우에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인정하였다.<sup>9)</sup>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 연결정보를 제공할 목적의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판 등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와, 그러한 게시판 등에 연결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24조 제1항 제4호, 제5호). 다만 대상판결의 사안처럼 적법하게 공개된 영상을 임베드하는 경우는 이러한 규율과 궤를 달리한다. 이때 이용의 적법성은 사실상 플랫폼 이용약관이 좌우하며, 유튜브 약관의 “다른 이용자에 대한 라이선스” 조항은 창작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범위한 이용허락으로 작동한다. 창작자는 업로드 단계에서, 언론사는 이용 단계에서 약관의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 법원이 조건과 약정을 구분하여 전자의 위반만을 저작권 침해로 다룬 판단 방식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인지 아니면 계약상 의무 위반에 그치는지를 가르는 문제는 우리 실무에서도 되풀이되는 쟁점이기 때문이다.

보도의 자유와 창작자 보호 사이의 균형은 결국 이용 방식의 구체적 형태에 따라 조정된다. 대상판결은 그 조정이 이용 목적의 추상적 정당성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이용하였는지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9)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링크 행위만으로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 13748 판결이 변경되었다.

---

## 참고자료

---

- Richardson v. Townsquare Media, Inc., No. 25-291-cv (2d Cir. Apr. 23, 2026).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이우영,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구술변론 관련법제와 실무운용”,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 2006.